

環境法 세미나에 붙여

金 道 昶*

몇 해 전에 法科大學을 卒業한 사람은 環境法이라는 말을 듣고 어리둥절할 것이다. 環境法은 그만큼 새로운 法分野이다. 70年代 初까지만 해도 公害法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었다. 사실 環境法이라는 개념 자체가 公害法에서부터 발전된 것이었다. 말하자면, 對症療法的인 公害對策論論하다 보니 그것으로 問題가 根本的으로 解決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認識하게 되어, 原因療法的인 環境資源의 利用·保存·開發의 問題로 關心을 돌리게 된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環境法은 環境汚染對策法과 環境資源保存法을 포섭한 하나의 法秩序로서 그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環境法은 私法的 側面도 있고 公法的 側面도 있으며, 어떤 이는 公法과 私法의 中間領域인 社會法的 성격의 가졌다고 하나, 나는 역시 環境法은 行政法的 側面을 가장 많이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行政法學에서 1960年代 이후 가장 關心事가 된 것이 配分參與·住民參加 문제와 더불어 環境保護의 문제였다. 오늘날 國內의 行政法教科書들을 보더라도, 用語는 다를지라도, 혹은 開發行政, 혹은 規制行政, 혹은 整序行政 등의 이름 아래서 環境問題를 다루고 있고, 나 자신은 環境整序行政이라 하여 그 속에 環境保存行政과 環境汚染對策行政을 포함시켜서 설명하고 있다.

어떻든, 이러한 의미의 環境法이 하나의 學問體系를 형성하여 1970年代 初부터 歐美의 法科大學講座에 끼이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大學講座에 그것이 오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韓國法學教授會·環境法學會 등 研究團體에 의한 研究도 활발히 전개되어 옴으로써 環境法은 1970年代 後半에 들어와서 學問적으로 定着된 느낌이다. 더욱이 1980年 10月 27日에 公布·施行된 第5共和國 憲法은 제33조에서 環境權을 明文化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욱 뒷받침하는 人間尊嚴·幸福追求權·人間다운 生活權, 그리고 保健權 등 基本權條項을 整備하고, 아울러 國土의 利用·開發·保存을 강조하는 規定들을 두고 있는 점에서, 環境保全에 관한 限世界 어느 나라 憲法에도 類例가 없을 정도로 環境問題에 대하여 非常한 關心을 보인 셈이다.

이러한 憲法的 關心의 表示는 불과 몇 해 前인 1960年代까지만 해도 想像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참으로 今昔之感이 없을 수 없다. 그 당시에 經濟計劃의 수립에 참여하고 있는

* 辯護士, 前 法制處長

「테크노크라트」들, 심지어 經濟閣僚들 입에서조차, 公害防止의 필요성·당위성 이야기가 나오면 人口가 많아서 야단인데 다소 公害가 있으면 어쩌냐 라는 말이 公開會議 席上에서도 서슴없이 나올 수 있는 그런 霧圍氣였던 것이다.

우리 나라도 분명히 初期의 ‘公害防止法’時代에서 ‘環境保全法’(1977.12.31 制定)의 時代로 접어들고 있음을 실감케 한다.

人間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부터 “氣品 있고 幸福한 生活”을 원한다. 깨끗한 環境에서 健康하게 살고 싶어 한다. 憲法에 環境權도 保障되고 獨立된 主管廳으로서의 環境廳도 발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制度的 整備의 進행만으로 環境問題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다음 몇 가지 所見을 적어 보기로 한다.

첫째는, 先進國家들의 環境政策上的 失敗經驗을 우리 나라에서 되풀이하지 아니할 懸智가 필요하다. 工業國家인 日本에서 追放된 公害産業을 우리 나라에서 받아 들어서 輿論을 시끄럽게한 事例을 우리는 종종 듣고 있다. 環境汚染의 過程에 있어서 다른 나라가 걸어간 길을 우리가 그대로 간다는 것은 현명치 못한 일이다.

둘째로, 環境問題의 解決을 위하여 人口問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人口爆發이 快適한 環境의 조성을 해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 人口의 年平均 成長率이 1980年을 기준으로 할 때 1.57%로서 아직도 다른 先進國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며, 人口密度는 같은 해 378名/km²이다. 1人當耕作面積은 1979年 기준으로 0.6km²였다. 이러한 狀況 속에서 살기 좋은 生活環境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人口增加問題에 못지 않게 심각한 것이 人口移動問題이다. 全體人口의 約 20%가 首都에 集中하고 있는 사실은 단지 環境問題의 次元을 넘어서 安保問題로 直結되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서울은 人口分散의 段階의 現象이었던 「도나즈」型的의 그 中心空間을 다시 30層까지의 高層빌딩으로 메우게 되는 모양이고, 新開發地區인 永東地區 등은 庶民住宅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綠色 아닌 灰色의 「콩크리트」 構造物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學校기타 都市機能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環境政策이나 人口政策이 모두 原點에서 担保하고 있다는 인상을 부인하기 어렵다.

셋째로,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環境法의 定着은 전통적인 司法構造의 變革을 前提로 한다고 하겠다. 民事訴訟上으로도, 종래의 訴訟法理論이 豫測하지 못하였던 環境訴訟에 있어서, 環境汚染防除請求要件의 緩和라든가 不法行爲法理에 있어서의 過失責任·違法性·因果關係 등의 理論의 再構成이 요청되고, 環境行政訴訟에 있어서도 主觀的訴訟·事後救濟·取消訴訟中心主義·訴益狹小와 같은 傳統的인 司法構造를 가지고는 새로운 環境問題에 直面하여 效果的인 權利救濟의 사명을 다하기 어렵다고 하는 時代感覺이 法官에게 요청되는 때라고 하겠다.

사람의 생각은 완만하고 現實은 날카롭다. 變化를 願하지 않아도 現實은 變하고 있다. 變

하고 있는 現實을 뒤따르려고 하지 않으면 그 現實은 사람을 反擊하거나 拋棄할 것이다. 오늘날의 世界는 資源民族主義의 亂氣流속에서 人間의 無能과 怠慢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가진 것을 자꾸만 잃어가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다. 무엇인가 空息할 것만 같은 混迷와 破壞와 優柔不斷에서 헤어나기 위해 「알빈·토폴러」의 豫見처럼 第3의 波濤의 文明이 우리에게 필요할지도 모르겠다.